

# 공 고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7 - 5호

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7년 3월 14일  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정이유

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“스포츠복지”에 관한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나. 스포츠 소외계층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(안 제3조)

다. 구청장이 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
라. 스포츠복지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17년 3월 18일**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 등

다. 보내실 곳 :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(등촌2동 512-1) 강서구의회  
(전화 : 2600-1807, 팩스 : 2600-1840)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조에 따라 강서구의 스포츠 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스포츠복지”란 스포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소외 계층인 저소득 노인, 아동, 청소년, 여성, 장애인, 다문화가족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적 봉사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구청장은 스포츠 소외계층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·육성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 및 위탁) ① 구청장은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
2.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,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3.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진흥
4.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컨설팅 사업
5.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예산의 지원)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

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  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